

## PVC수축라벨 규제에 대한 의견

노영철 / 동일화학공업(주) 대표이사

PVC수축라벨은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플라스틱병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 형태는 고대에는 목폐말, 섬유 등이 있었을 것이고 현대로 이어지면서 종이, 플라스틱, 은박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는 상품은 15,000에서 20,000종으로 보고 있는데 이들은 하나같이 라벨을 필요로 하고 있다.

라벨의 새로운 소재가 적극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30여년전으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플라스틱 라벨의 출현은 경이로운 변화였다. 라벨은 기능적 요구도 까다로우면서 생산성과 경제성까지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선택 결정을 할 때에는 복잡한 과정의 검토를 거치게 된다.

한번 결정되면 생산을 위한 설비도입이 이루어지는데 그 후로는 사실상 변경이 불가능하다. 과자나 스낵같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할 시에는 별도의 라벨을 부착하는 경우가 없이 포장지에 인쇄로서 상표, 사용설명, 제조원 등이 표시되나 병류에는 거의 라벨을 부착하여 사용된다. 플라스틱 라벨은 BOPP 재질을 병에다 접착제로 부착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PVC수축라벨로서 병에다 덮어씌우고 열로서 수축시켜 밀착시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종이라벨은 유리병에 많이 쓰이는 것으로서 날개로 절단된 상태의 라벨을 접착제로 접착시키는 것이다.

최근 환경부가 이 세가지 종류의 라벨 중 유독 PVC수축라벨을 문제시하여 사용규제하려는 목적이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자. 우선 본 법 제정의 근본취지는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동일재질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외에 다른 이유는 아무 것도 없다. 구차한 몇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것은 본 법 제정취지와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이다. 그렇다면 논리는 간단히 정리될 것으로 본다. 먼저 PVC수축라벨의 사용이 재활용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만 규명되면 본 법 제정의 불필요성에 대한 답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먼저 병종류의 재활용산업 실태를 면밀히 파악 해 보아야 할 것이다. 플라스틱 병의 종류는 앞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PET병류와 PS, PP, PE병으로 구분하게 되고 그 중에서도 PVC수축라벨을 많이 사용하는 병은 PET병이 제일 많고 PS와 PE병에도 일반적으로 사용돼 왔다.

그러면 PET병과 PS, PE병의 재활용 현황을 살펴보자. PET병은 10년전 정부가 재활용 촉진을 독려함에 따라 100여억을 투자하여 세계 최첨단의 전자동 설비를 도입, 가동중에 있다. 그것도 수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개선 의지를 갖고 적자를 감수하면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재는 분리수거되는 공병의 양이 부족하여 전면 가동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설비에서는 PVC수축라벨이든 BOPP접

착라벨이든 관계없이 자동으로 제거되어 분리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라벨재질로 인하여 재활용에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다.

분리제거된 라벨은 여러가지가 섞인 스크랩으로서 전문허가 처리업체에 맡겨져 최종처리되고 있다. 70년대에 시작한 고물상을 겸하는 재생업자가 아직 몇몇은 잔존하고 있지만 그곳도 상당히 자동화하여 라벨로 인한 재활용 불가능을 제기하는 곳은 없다. 설사 이의를 제기한다하더라도 시대적 낙오가 되어버린 가내공업을 기준으로 전체를 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설사 동일 재질을 사용하여 인쇄된 라벨과 신재에 가까운 봄통재를 섞어서 재생원료를 만든다면 1등급품을 3등급품 이하로 전락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에 역행하는 결과가 되고 동일재질을 사용하여 혼합 재생하겠다는 논리는 기초를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이다.

이것은 실제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검토되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실례를 찾아 보겠다. 96년 서울특별시는 느닷없이 유가공제품에 사용하는 PVC수축라벨을 동일재질인 PS로 바꾸라는 고시를 발표하고 96년 10월부터 실시하라는 것이었다. 어느법에 근거하고 어떤 이유인지 공식으로 발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을 시도한 것이다. 업계는 근거법을 따지고 이유를 물기 전에 범법자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일념으로 냉가슴을 알아 가면서 귀중한 외화를 1000만불이나 소비하면서 서울시 고시에 순종했던 것이다. 지금 실시된지 1년반이 지난 현재 재활용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결과 분석을 해야할 책임은 바로 이 고시를 강행한 서울시 일 것이다.

당시 이 고시를 강행한 이유가 단지 재활용을 원활히 하겠다는 것이었으므로 법적용 시비는

논외로 하고라도 재활용사업에 미친 결과 분석을 면밀히 하여 이 사업을 더 확대 실시해야 할 것이지 철회해야 할 것인지의 기초자료 정도는 만드는 것이 천만불의 외화를 탕진한 댓가의 일부라도 얻는 것이라고 본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재활용 사업에 도움을 주기는 커녕 오히려 장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까지는 라벨을 벗겨서 몸통부분을 적어도 2등급 정도의 재생재료로 활용할 수 있던 것이 인쇄된 라벨과 섞어서 재생을 하다 보니 3등급 품도 안된다는 것이다. 분리처리 방법이 비중에 의한 분리방법인데 동일재질이다 보니 분리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얼마나 어리석은 행정인가? 물론 서울시도 잘해보겠다는 의욕으로 추진한 것이지만 면밀한 분석없이 한두사람의 탁상공론이 이같이 국력을 허비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는가?

지금 환경부는 서울시의 법적용 착오를 합법화 시켜주려는 의도와 재활용 사업을 보다 용이하게 도와 주겠다는 뜻으로 본 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신중히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먼저 동일재질을 사용했을 때 재활용사업에 도움이 되는지, 방해가 되는지 실제로 현장 조사를 시행하고 시험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잘못된 판단으로 재활용사업을 방해하고 외화만 탕진해야 하는 정책을 강행한다면 누가 이 국가 손실을 책임져야 할지 확실히 해 두어야 할 것이다. 시험삼아 한번 해보자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큰 국가 손실이 따르고 산업전반에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환경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실험과 조사가 뒷받침된다면 업계도 낸차계획을 세워 실시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